

당첨자를 대상으로 공급계약 체결 전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2조(입주대상 자격 확인 등)에 의거하여 당첨자에 대한 자격검수를 진행합니다. 또한 자격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 하셔야 하며, 미 제출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.

- ※ 부적격자는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- ※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.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 기준	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통 서류	○		신분증	본인	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○		서약서	본인	[건본주택 비치]
	○		개인정보수집 · 이용동의서	본인	[건본주택 비치] 개인정보수집안내
	○		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인감도장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(본인 발급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용은 불가함
	○		주민등록표등본 (전체포함)	본인	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	○		배우자	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(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)
	○		주민등록표초본 (전체포함)	본인	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주소변동 사항 · 사유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원	본인	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※ 발급기간: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 (2022.05.13)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복무확인서	본인	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(10년 이상 군복무 기간 명시) 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(추천대상자에한함)	
제3자 대리인 신청시	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)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.				
	○		위임장	-	[건본주택 비치]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
	○		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	본인	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(본인 발급용)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
부적격 당첨 통보를 받은 자		○	무주택 소명 서류	해당 주택	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(가옥대장등본 포함)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소형 · 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	○	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	-	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

- 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22.05.13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.
- ※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,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번호, 세대주 성명, 관계 및 주소 변경 이력이 표기되도록 "전체포함" 및 "상세"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정당한 당첨자(적격여부)를 판명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체의 추가서류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,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

※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자 본인이 관계법규를 직접 확인하시고,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